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보도자료, 2009년 12월1일자

“이번 정기국회에서 석면특별법을 꼭 제정해 주세요”

석면피해보상특별법 제정촉구 국민서명운동결과

국회와 환경부에 전달

11개월간 전국에서 93,052명 참여,



<사진, 2009년12월1일 오전 국회본관 앞에 선 석면피해자협회 최형식씨 (중피종암환자).
최씨는 이날 93,052명의 석면특별법 국민서명결과를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상임대표 백도명)와 한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회장 박영구)는 지난 1월부터 11월말까지 진행된 '석면피해보상특별법 제정촉구 국민서명운동'을 종합한 결과 전국에서 93,052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석면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과 충남 홍성, 보령 지역 주민들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리고 건설노동조합 등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서명에 참여했다.

석면추방네트워크의 백도명 서울대교수, 안종주 박사, 최예용 집행위원장 등과 석면피해자협회의 최형식 환자(중피종암), 정지열 환자(석면폐) 그리고 서울 왕십리뉴타운 이은정 주민 등 석면피해자들은 12월 1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실을 방문하여 추미애위원장과 한나라당 조원진 간사의원, 민주당 김재운 간사의원에게 서명용지를 전달했다. 또 석면특별법안을 제출한 바 있는 박준선의원, 김상희의원 그리고 권선택의원 등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14명의 여야 의원 전원에게 서명결과를 전달했다. 백도명 교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문제로 법을 만드

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석면특별법 제정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서명용지를 전달받은 의원들은 "석면문제의 심각성은 충분히 알고 있다. 석면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 제정에 여야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 회기중에 석면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두 차례의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된 경기도 광명시에서 살다가 석면암인 악성중피종에 걸린 최형식씨는 "석면암에 걸려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해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속히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석면특별법을 꼭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충남 홍성 석면광산 부근에서 거주하다 석면폐 진단을 받은 정지열씨는 "석면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에 하루 빨리 만들어져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이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치료를 받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석면건물철거 한가운데 어린이집이 방치되어 문제가 된 서울 왕십리뉴타운의 철거민 이은정씨는 "뉴타운 짓는다고 건물을 마구잡이로 철거하고 있다. 많은 주민들이 석면노출을 우려한다."며 피해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2009년 1월 국회앞에서 열린 석면특별법제정 국민서명운동 발대식 모습>

이들은 또 일본에서 진행되는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상황을 소개하며 한국의 석면특별법 제정시 일본의 오류를 반복하지 말라는 조언이 담긴 일본 전국석면대책전국연합회의 후루야 수기오 사무국장의 서한을 전달했다. 후루야 국장은 서한에서 일본 민주당이 선거과정에서 석면구제법의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보상대상질병과 보상규모를 현실화할 예정이라고 소개하면서 한국에서 제정되는 법안이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권고했다.

이날 석면추방네트워크 관계자와 석면피해자들은 서명결과를 전달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 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추미애

한나라당: 조원진(간사), 강성천, 박대해, 박준선, 이두아, 이화수, 조해진 (전재희 의원은 장관입각으로 제외)

민주당: 김재윤(간사), 김상희, 원혜영, 이찬열

비교섭단체: 권선택(선진당), 홍희덕(민주노동당)

석면특별법 서명결과는 환경부 오종극 환경보건정책관을 통해 주무부서인 환경부에도 전달됐다.



<사진, 2009년 12월1일 석면암환자 최형식씨가 93,052명의 석면특별법제정촉구 서명결과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왼쪽부터 김재윤 민주당 간사의원, 조원진 한나라당 간사의원, 최형식씨, 석면특별법을 제출한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



<사진, 2009년 12월1일 석면추방네트워크 백도명 대표(오른쪽, 서울대교수)와 석면피해자협회 최형식씨(가운데, 악성중피종암환자)가 석면특별법 제정촉구 국민서명운동결과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에게 전달하며 석면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별첨자료

1. 서명결과
2. 일본서한
3. 2009년도 활동일지
4.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구성현황

내용문의; 최예용 집행위원장 010-3458-7488

<석면피해자보상특별법 제정촉구>
국민서명운동결과
총 93,052명

서명운동기간;
2009년 1월20일~11월30일

한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한국 국회의 석면특별법 제정관련 의견서

일본 석면대책전국연락회의 후루야 수기오 사무국장

2009년 11월 26일

石綿対策全国連絡会議BANJAN(Ban Asbestos Network Japan)

事務局長 후루야 수기오(古谷 杉郎)

136-0071 東京都江東区亀戸7-10-1 Zビル5階

TEL 03-3636-3882、FAX 03-3636-3881

banjan@auwakwak.com

먼저, 한국 국회가 석면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소식에 그동안 한일간 산업보건과 석면문제 협력을 위해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해온 사람으로서 반갑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석면피해보상법을 먼저 제정하고 경험해온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귀 국회의 법제정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본 석면건강피해구제법의 최대 약점은 피해자·가족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일 없이, 또, 국회 심의도 충분히 다하지 않고(야당의 수정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고) 졸속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문제점 중 하나는, 피해자 생존시 청구수속을 하지 않으면 전혀 급부를 하지 않는다는 점과, 법 시행 전에 사망한 피해자 가족의 구제 급부 청구권이 시행으로부터 3년(즉 올해 봄)으로 제한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동법은 시행으로부터 5년 이내 - 즉 2011년 봄까지 재검토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재검토를 하기도 전에 청구권을 빼앗긴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는 우리의 문제 제기가 여론이나 언론, 국회 의원 분들의 이해를 얻고, 작년 긴급 법개정을 했습니다. 이제 피해자 본인이 수속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해도 유족이 급부를 받게 되며, 또, 법 시행 전 사망 사안에 대한 청구 기한은 3년간 연장되고 실질적으로 사망자의 청구권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도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됩니다. 올 여름 총선거로 '격차도 틈새도 없는 구제 실현'이나 '석면피해 없는 사회실현을 위한 석면대책종합추진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건 정당이 정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앙환경심의회에 석면건강피해구제소위원회가 설치되고 11월 27일부터 검토가 시작됩니다. 저도 9명의 위원 중 한 명으로 지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것은 현정권의 공약을 구체화하는 정책이자 저 자신이 그 실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결의를 굳히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검토 사항은 구제대상이 되는 질병 추가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비노동자 피해의 경우에는 중피종과 석면폐암 밖에 구제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석면폐가 추가되는 것은 전 정권으로부터의 기정 방침이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석면폐 합병증, 미만성 흉막비후, 양성 석면흉수, 그 외 석면을 흡입하는 것으로서 발생한 것이 분명한 질병을 구제대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제대상질병의 확대는 정령 개정에 의해 내년 봄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의 단계는 구제제도 전체에 대한 재검토입니다. 이 점으로 우리는 ①구제급부의 내용·수준 등을 산재보상 같은 수준으로 가능한 한 가깝게 하는 것 및 노동자 이외인 ②주민이나 자영업자 등 고위험 그룹에 대한 건강관리제도를 창설하는 것을 재검토의 큰 기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법개정으로 연장된 청구 기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기한이나 시효 그 자체를 철폐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산재보험법에 대해서도 격차나 틈새를 없애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피종의 2배라고 말해지는 석면폐암의 보상·구제가 압도적으로 낮은 현상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은 법령 개정보다도 인정기준과 그 운용, 그리고 석면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얇은 임상의료의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입니다.

또 석면건강피해의 보상·구제나 건강관리가 산재보험법이나 석면건강피해구제법 등 다른 제도에 걸치고 있기 때문에 “틈새 없는 구제의 검증” 하나를 가져도 관련하는 모든 제도가 서로 협력하는 것이 불가결합니다. 공통되는 문제의 정합화나 일원화를 확보하는 법적 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피종등록제도 창설이나 역학조사 실시, 진단·치료 대책 등 과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석면건강피해 구제법이나 산재보험법의 개정에 머무르지 않고 석면대책종합적추진법이든지 석면대책기본법 같은 기본법(Umbrella)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의 하나입니다.

석면대책종합적추진법이 필요한 또 하나의 큰 이유가 건강피해대책보다 한층 더 폭넓은 부처나 법제도가 관계하는 기존 석면대책입니다. 건물을 중심으로 우리 주변에 지금도 아직 존재하고 있는 석면에 대한 대처를 잘못하면 석면피해는 몇 세대나 계속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점으로 법령이 실현해야 할 주된 이념은 아래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석면피해 없는 사회실현이라는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종합적·전략적인 방침·체제 등을 확립한다.
-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등의 책무를 분명히 하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차원에서 국민의 적극적 관여를 촉진·확보한다.
- 관계법령·행정기관 등의 역할 분담을 전체 구상 속에서 명확하게 평가해 정합성·효율성·제휴 등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틈새”를 없애는 노력을 한다.
- 모든 기존 석면 등이 신속하게 그 존재가 파악되며, 적절히 관리되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안전하게 제거·폐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일반 원칙을 확립한다.

석면대책종합적추진법은 그 외에도 전면금지대책이나 해외 이전 저지 및 국제 협력 등의 과제도 다룰 수 있습니다.

석면건강피해구제법 등의 개정은 법 재검토 기한인 2011년 봄에 시간이 맞도록 행해질 예정이며, 석면대책종합적추진법은 가능하면 그 시기에 맞추고, 아니어도 그렇게 늦지 않은 시기에 실현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나 석면기업의 책임을 확인하는 것이 극히 중요한 것은 물론입니다. 그 위해도 제삼자위원회 등에 의해 국가나 석면기업의 과거의 대응을 검증하고, 또, 가능한 한 석면관계자료를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상과 같은 모습으로 석면문제에 전면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된다면, 다른 여러 가지 건강피해나 리스크 대책에 있어서 귀중한 모델이 되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석면문제는 또 세계 공통의 과제이며, 각국의 긍정/부정 양면의 경험을 배우면서 함께 활동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앞으로도 일본과 한국의 제휴·협력이 전진하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주요 활동일지

- 1월 <충남 홍성보령 석면광산주민 석면건강피해문제> 대책활동,
- 석면특별법 국민서명운동 시작,
- 2월 <서울지하철 석면오염> 조사발표,
- <충북 제천 석면광산지역 석면문제> 조사발표
- 3월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석면오염> 조사발표,
- 대만 석면문제 한일대만 3국 공동조사,
- 한일 석면피해자 교류(동경)
- <강원영월, 충북제천, 경북영주 석면광산 석면문제> ,
- 4월 <베이비파우더 석면탈크사건> 대책활동,
- <서울 재개발지역 석면문제> 조사발표
- 한일 석면피해자 교류(오사카)
- 홍콩 아시아석면심포지엄,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A-BAN)발족
- 5월 <시멘트 석면문제> 조사발표,
- <대구지역 석면문제> 조사발표,
- 환경성 석면피해자 법적소송 1차 공판(부산)
- 6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석면폐기물불법처리사건> 조사발표,
- <은평구청 석면문제> 조사발표
- 7월 <경기 화성지역 석면문제> 조사발표,
- <전국학교석면문제> 대책활동,
- <일용직노동자 석면피해자 찾기> 캠페인,
- 8월-9월
- <서울 왕십리뉴타운 흥익어린이집 석면문제> 조사발표 및 대책활동,
- <경기 성남지역 석면문제> 조사발표,
- 10월<전국 석면광산 환경문제> 조사발표,
- <서울 뉴타운지역 석면문제> 조사발표,
- <부산 재개발지역 석면문제> 대책활동,
- 11월<전국 염전과 소금제품 석면문제> 조사발표,
- <무궁화호 새마을호 철도객차 석면문제> 조사발표,
- <서울지하철 경북구역 등 석면문제> 조사발표
- 석면특별법 제정추구 국민서명운동 93,052명 완료, 국회 환경부 전달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구성현황

공동대표; 6명

- 백도명 (상임, 서울대학교 교수), 박영구 (한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회장),
- 양길승 (녹색병원 원장),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고문),
-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 배강욱 (민주노총 부위원장)

집행위원장; 최예용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집행위원; (참가단체 석면분야 책임자 또는 담당자)

- 강동목, 김영란, 김은기, 김형렬, 백도명, 변혜진, 스희키, 이지현, 이현정, 임상혁, 정남순, 정현정, 조기홍, 최예용, 최준호, 최학수,
- (한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박영구, 최형식, 정지열 등

자문위원;

- 백남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안종주 ('조용한 시한폭탄 석면공해'(1988) 및 '침묵의 살인자, 석면'(2008)의 저자),

(법률분야);

- 정남순 (변호사,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박영만 (변호사, 의연)
- 박태현 (변호사, 강원대학교 법대 교수) 변영철 (변호사, 부산)

(의료분야)

- 백도명 (산업의학 전문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임상혁 (산업의학 전문의, 녹색병원)
- 강동목 (산업의학 전문의, 부산대 의대 교수)
- 김형렬 (산업의학 전문의, 가톨릭대 의대 교수)

(국제분야)

- 후루야 수기오 (FURUYA Sugio, 일본석면대책연락회의 BANJAN 사무총장, 일본),
- 로리 카잔알렌 (Laurie Kazan-Allen, 국제석면추방기구 IBAS 대표, 영국),
- 베리 캐슬만 (Barry Castleman, 국제석면전문가, 미국)

한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 회장; 박영구 (부산, 석면폐 환자),
- 수도권지역위원장; 최형식 (악성중피종암 환자)
- 충남지역위원장; 정지열 (석면폐 환자)

참가단체; 28개

- (석면피해자단체) 한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 (노동조합 분야)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 (안전·보건의료 분야)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환경운동 분야) 시민환경연구소, 강남서초환경연합, 환경법률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 (학계) 서울대 보건대학원, 가톨릭대 보건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석면중피종연구센터, 한양대 환경및산업의학연구소,
- (부산공대위) 부산환경운동연합, 환경과자치연구소, 한노보연 부산연구소, 한진중공업노동조합,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민주노총부산지부, 의료연대회의 등